

1. 개정이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“24.1.16 공포)으로 백년
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, 성장 잠재력이 높은
소상공인을 안정적·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게 되었음. 이와 관련하여,
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, 본 시행규칙을 개정
및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절차 신설(안 제1조의4)
- 백년소상공인은 중기부 장관에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매출액·상시근
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며,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한 7일을 부여
 - 중기부 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요건을 평가하고,
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게 통지하여야 함
 -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
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,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 게시
 - 백년소상공인은 사업장·제품·포장·용기 등에 '백년소상공인 지정의
표시'(별표1 신설)를 할 수 있음
- 나.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(안 제1조의5)
- 중기부 장관은 지정취소 문서를 우편·교부, 정보통신망 등으로 당사자에
통보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함
 - 중대사유는 1회 위반시 지정취소, 그 외는 2회 위반시 지정취소(1회
경고)로 구분(별표2 신설)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제1조의6 및 제1조의7로 하고, 제1조의4
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
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
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자등록증
 2.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7
일 이내 보완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거절할 시
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
소상공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
는지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4. 15. ~ 5. 27.)
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백년소상공인의 요
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백
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
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
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⑦ 법 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가 헐어
못쓰게 된 경우

2.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
⑧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
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·용기에 별표 1
의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
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
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1조의5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
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소상공인
에게 취소 사유,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

다. 이하 같다)를 보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·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조의4제8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>

백년소상공인 BI(제1조의4제8항 관련)	
	
1. 법 제16조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BI를 표시하고, 법 제16조제1항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BI를 표시한다.	
2.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래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, 지붕과 한자 ‘사람 인’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.	
3.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에 국문, 영문을 함께 적어 사용한다.	
4. BI는 표시하려는 제품, 포장용기, 인쇄물의 크기·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1조의4(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사업자등록증</u> <u>2.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</u> <u>3.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완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③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거절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 <u>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</u>

제1조의5제4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(제1조의5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.

나.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횡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횡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조항	처분내용	
		1회 위반	2회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	지정취소	
나.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	경고	지정취소
다.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. 그 밖에 사외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	경고 경고	지정취소 지정취소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은 2028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	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⑥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⑦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1.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가 헐어 부서진 경우 2.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기재
--	---

	상황이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·용기에 별표 1의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.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 제1조의5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취소 사유,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보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·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
<신 설>	

	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제1조의6·제1조의7 (현행 제1조의4 및 제1조의5와 같음) [별표1] 백년소상공인 BI(제1조의4제8항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1. 법 제16조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BI를 표시하고, 법 제16조제1항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BI를 표시한다. 2.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래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, 직물과 한자 '사' '단' '인'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재출 발전을 상징한다. 3. 굵도 및 기점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에 곡률, 영문을 함께 적어 사용한다. 4. BI는 표시하려는 제품, 포장용기, 인쇄물의 크기·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 [별표2]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(제1조의5제4항 관련) 1. 일반기준		
			
제1조의4·제1조의5 (생략)			
<신 설>			
<신 설>			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 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.

나. 행정처분 재발기준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재발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제척발효를 기준으로 한다.

다.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조항	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	지정 취소
나.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에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	지정 취소
다. 부도, 폐업 또는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으므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	경고
라. 그 밖에 사회적 불리함을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	지정 취소